

# 예 산 총 칙

2008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97,329,123	17,919,874
일반회계	516,537,698	15,496,131
특별회계	80,791,425	2,423,743
공기업특별회계	72,208,784	2,166,2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4,101,838	723,05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536,911	796,107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1,570,035	647,101
기타특별회계	8,582,641	257,479
주택사업특별회계	455,150	13,65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456,967	133,709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1,893	1,857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790,639	83,719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68,400	2,05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20,592	9,618
기반시설특별회계	429,000	12,870

제 2 조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07년도 계속비이월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07년도 사고이월사업조서는 별첨 "사고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200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4,564,928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08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3,100,000 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